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| 등록번호 | 복지정책과-15744 |
|---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일자 | 2016.4.23. |
| 결 재 일 자 | 2016.4.25. |
| 공개구분 | 부분공개 |

| 주무관 | 희망복지지원팀장 | 복지정책과장 | 복지문화국장 | |
|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신영옥 | 옥미정 | 김구연 | 전결 04/25 김효길 | |
| 협조자 | | | | |



2016년 제3차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보고

■ 실무협의체 회의결과

의 일 시 : 2016. 4. 19(화) 16:00 ~ 17:00

○ 장 소 : 본관 지하종합상황실

○ 참석위원 :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김성천 위원장외 10명

○ 안 건

-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에 따른 추천안내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대한 심의 등 총6건 심의

| 연번 | 안 건 | 해당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|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| 통합조사팀 |
| 2 | 수급권자의 재산범위특례에 대한 대한 심의 | 통합조사팀 |
| 3 | 수급권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심의 | 통합관리팀 |
| 4 |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 | 희망복지지원팀 |
| 5 |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·주거비 연장 승인 심의 | 희망복지지원팀 |
| 6 |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부적정 및 환수결정 심의 | 희망복지지원팀 |

2016 . 4.

강 남 구 (복 지 정 책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| 검토분야 | 확인 및 적시사항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관련 규정 및 근거 | 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| | |
| | ·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,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·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제5조 | | |
| 추진 경위 |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| | |
| TU OT | ·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관련업무 심의 의결 | | |
| 예산 사항 |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| | |
| | ·해당없음 | | |
| 수 혜 자 | 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| | |
| 및 범위 | • 해당없음 | | |
| 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: 〕 〔신규: 〕 | 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| | |
| 타 기관 사 례 | 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·해당없음 | | |
| |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| | |
| 전 문 가 자 문 | •해당없음 | | |



20/6년 세3차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결과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등 총6개 안건의심의·의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절대빈곤층 및 위기가구 발굴·지원을 위한 빈틈없는 민생안정 대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I 관련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(지역사회복지협의체)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5 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(실무협의체의 기능)

Ⅱ 회의결과

O 일 시: 2016. 4. 19(화) 16:00 ~ 17:00

O 장 소 : 본관 지하종합상황실

O 참석위원: 11명(당연직 위원 5명 / 민간위원6명)

O 안 건

-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에 따른 추천안내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대한 심의 등 총6건 심의

| 연번 | 안 건 | 해당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|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| 통합조사팀 |
| 2 | 수급권자의 재산범위특례에 대한 대한 심의 | 통합조사팀 |
| 3 | 수급권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심의 | 통합관리팀 |
| 4 |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 | 희망복지지원팀 |
| 5 |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·주거비 연장 승인 심의 | 희망복지지원팀 |
| 6 |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부적정 및 환수결정 심의 | 희망복지지원팀 |

Ⅲ 회의결과

- 16:00 개 회
- O 16:00 ~ 16:10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에 따른 추천안내
- O 16:10 ~ 16:50 안건심의 : 총6건
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
 - 수급권자의 재산범위특례에 대한 대한 심의
 - 수급권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심의
 -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
 -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부적정 및 환수결정 심의
- O 16:50 ~ 17:00 의결서 날인 후 폐회

IV

심의결과

| 안 건 | 의 결 내 용 | 추진근거 |
|---|---|---|
|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| - 심의대상 18가구 26명 (부양의무자 36가구76명) : 원안가결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2항7호, 2016년사업안내지침p171 |
| ②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에 대한 심의 | - 심의대상 1가구 1명 원안가결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2항 2016년사업안내 지침 p190~192 |
| ③ 기초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심의 | - 심의대상 5가구22명 (부양의무자6가구7명) 원안가결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5조4호, 제5조5호 |
| ④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 | - 심의대상 19가구 (생계·주거11가구, 의료8가구) 원안가결 |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,제14조, 제15조(2006.3.24 시행) |
| ⑤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·주거비 연장승인 심의 | - 심의대상 3가구 : 원안가결 |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,제12조 |
| ⑥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부적정 및 환수결정심의 | - 심의대상 1가구(의료비) 원안가결 |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|

V 소요예산

O 참석수당: 회의 참석 위원 1인당 10만원 (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참석수당 지급불가)

- 산출내역 : 6인×100,000원=600,000원

○ 예산과목 : 복지정책과,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, 민관협력체계구축,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.

VI 기대효과

- O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및 재산범위특례, 긴급복지연장 지원 심의 등을 통해 보호누락자 방지에 기여
- O 빈틈없는 민생안정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

붙 임: 1. 2016년 제3차 지역사회실무협의체 회의자료 1부.

- 2. 회의록 1부
- 3. 심의의결서 6부.
- 4. 회의참석부 1부. 끝